

변협 협회장선거, 불법 여론조사로 벌써 과열

부협회장직 입도선매 행태, 여론조사 핑계로 지지 요구까지 지방회원들, 직선제 찬물 끼얹을까 걱정 “반칙에 패널티 줘야”

대한변협 협회장 첫 직선제 선거가 후보등록도 하기 전에 과열혼탁 보도가 이어져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다섯명의 변호사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20일에 대한변협에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대한변협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 변호사들은 “왜 협회가 누구를 찍을 건지 묻느냐”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현재 협회장 후보로는 김현(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회 회장, 양삼승(65·4기)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 오욱환(52·14기) 서울회 회장, 위철환(54·18기) 경기중앙회 회장, 하창우(58·15기) 전 서울회 회장(성명 가나다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건호)는 “대한변협 선거관련 규범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엄금하고 있다”며 “당해 여론조사 업체에게 이를 중단할 것과 조사위탁자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는 공문을 전국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문제는 이런 과열 분위기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이다. 26~30일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며 내년 1월 14일 전국 변호사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

장준동 부산회 회장은 “모 후보가 지방마다 청년변호사 하나씩을 부협회장 시켜준다고 약속하며 그 변호사를 내세워 사무실 호별방문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후보등록도 하기 전에 과열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행동은 직선제 논란을 불러일으켜 제2회 직선제 선거를 원

천봉쇄하려는 계산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후보들이 지방부터 사무실 호별 방문 등으로 무차별 공세를 펴고 있으나 지방회 회장들은 직선제 과열 논란을 부를까 싶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회원들은 어렵게 이뤄낸 협회장 직선제가 과열혼탁 논란으로 찬물을 끼얹고 자칫 간선제 회귀 논란을 부를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회 소속 변호사는 9000명에 가깝고 서울 제외 지방 회원은 3300명 정도여서 서울에서 협회장 후보가 선출되면 대의원들이 간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은 거의 의미가 없어 협회장 간선제는 서울만의 협회장을 만든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다 지난해 직선제 선거로 바뀌었다. 사상 첫 직선제로서 지방회원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수장을 선출한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서울의 변호사들도 단일화가 거론되는 후보 2명으로부터 매일같이 이메일, 전화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벌써부터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다. 민 모 변호사는 그들의 이메일을 협회에 전송하며 정식으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가 책을 내고 그 책의 출판기념회를 하고 책을 준다는 명목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생겨나 사전선거운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변협 협회장 후보들을 취재한 한 법조기자는 “다른 후보의 사생활, 전력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을 ▶2면으로 이어짐



대한변협 제4차 이사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1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대의원 전자투표 시행규정 신설, 회관 이전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자체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2012년 임시총회 개최안 등을 통과시켰다.

사회를 맡은 강현 사무총장은 “이미 대의원선거에 한해서 전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현 개정안에 전자투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미비해 ‘대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회관 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건이었다. 변협은 애당초 역삼동 소재 품림빌딩으로 회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회관지분 매각 및 신용대출 등으로 162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으나, 최근 서울회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회관지분 매수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와 다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변협 이은목 재무이사는 “서울회가 회관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조건부로 위 회관지분 매도대금에 해당하는 47억원을 추가로 신용대출하고자 한다”며 “차기 서울회 집행부가 구성되면 회관지분 매도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이 역시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한변협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임대해 월세수입으로 이자비용 중 일부를 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치발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운영 중인 지자체세금낭비조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승격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변협은 다음달 5일 임시총회를 열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개정안 및 회관이전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공고 제 1 호

선 거 공 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6조 및 동 시행규정 제10조에 의거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p>1. 선거명 :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p> <p>2. 선거사유 : 협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p> <p>3. 선거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 2012. 11. 26.(월) ~ 11. 3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장소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각 지방회 및 지회 사무국 <input type="checkbox"/> 후보자 등록기간 : 2012. 11. 26.(월) ~ 11. 3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일 09:00~18:00) ■ 등록장소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2012. 12. 1.(토) ~ 2013. 1. 14.(월) (45일) <input type="checkbox"/> 조기투표일 : 2013. 1. 11.(금) 10:00 ~ 17:00 <input type="checkbox"/> 선거일 : 2013. 1. 14.(월) 10:00 ~ 17:00 <input type="checkbox"/> 결선투표일 : 2013. 1. 21.(월) 10:00 ~ 17:00 <input type="checkbox"/> 선거장소 :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election.koreanbar.or.kr) ‘협회장 투표소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변협신문 언론중재위에 회부돼

서울회, 강 변호사 입회거부 기사에 정정보도·천만원 배상청구

대한변협신문이 처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됐다.

10월 22일자 본보 7면 '지방회가 등록변경 거부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오욱환 회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낸 데 따라, 지난 22일 제7중재부(부장 배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26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회는 언론조정신청서에서 "등록변경을 통

한 강 모 변호사의 서울회 입회신청은 서울회 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된바 이 과정에 오욱환 회장이 개입한 바는 전혀 없다. 따라서 오 회장이 서울회 규정을 빌미삼아 회장직을 남용, 특정 개인 변호사의 서울지역 개업 방해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대해 정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내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청년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더러 허위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면 '협회장 선거 과열'에서 이어짐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단체도 다른 여타 직역단체 선거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 솔직하게 비방한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말했다.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은 "대한변협 협회장은 변호사의 법치주의 확립과 공익활동 강화 등 역할이 막중하다"며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협회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사상 첫 직선제의 취지에 맞춰 요청해 온 지방회에서 후보연설회를 갖기로 결정, 명실상부 전국단위 선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한 60대 변호사는 "취슬이 울리기도 전에 뛰어나가 공을 차는 선수는 투표대상에서 제외되면 되고 루머를 퍼뜨리며 모략과 헐담을 일삼는 후보를 가려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선거규칙상 반칙 선수는 퇴장시키는 선거규정이 없

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협회장은 사법부, 검찰, 재야라는 법조삼륜의 한 축, 변호사들의 수장으로서 신법조 시대라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의 재야변호사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 그의 공약과 비전에 1만2000여 변호사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공명 정대한 선거로 적합한 인물을 찾아낼 필요성이 크다.

변협회장 선거는 11월 12일 기준으로 협회에 등록 및 개업신고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권은 선거일까지 개업을 유지해야만 효력이 있다. 또 선거권 기준일 시점으로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권 기준일 이후 변경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념해야 한다. 사전선거운동이나 비방 등 부정선거운동을 접한 회원은 지체 없이 협회에 알릴 것이 요망된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koreanbar.or.kr】

12월부터 美시라큐스대 교수 필진 위촉

대한변협신문은 오는 12월부터 미국 시라큐스 로스쿨 교수들의 글을 신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검찰제도에 대해 소개해줄 것을 청탁했으며 한달에 한번씩 미국의 사법제도, 변호사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칼럼을 맡아주신 교수들에게 감사드리며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Aviva Abramovsky

Abramovsky 교수는 시라큐스 법대에서 보험법 분야를 담당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Bender's New York Insurance Law Treatise의 담당 에디터로 활약 중입니다. 시라큐스 법대에서 가르치기 전에는 뉴욕에 위치한 Anderson, Kill and Olick P.C.의 insurance group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Lisa A. Dolak

Dolak 교수는 특허법과 소송절차, 특허법과 대중 미디어, 그리고 특허법과 법률윤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리서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미디어 미국 특허 시스템과 언론 보도 범위의 연관성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CNY-TV의 시사 프로그램 "The Ivory Tower Half Hour"에 고정 패널로 출연 중입니다.



Robert G. Nassau

Nassau 교수는 1994년 부터 시라큐스법대에서 세금과 관련된 분야를 가르치고 있으며, 2003년에 설립된 시라큐스 법대 Low Income Taxpayer Clinic의 담당자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뉴욕 로체스터에 위치한 Boylan, Brown, Code, Vigdor & Wilson, L.L.P. 에서 세금 분야 법률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William C. Snyder

Snyder 객원 교수는 시라큐스 법대에서 연방헌법,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Snyder 교수는 13년간 펜실베이니아와 워싱턴 D.C.에서 연방 검사로 활동하면서 Greater Pittsburgh Violent Crimes/Gang Task Force 팀에서 펜실베이니아의 웨스턴 디스트릭트 역사상 가장 큰 중죄 케이스를 담당 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25時
-263-
〈고마운 생각〉
변호사 이영욱

변호사... 장시간 노동에 푹하면 야근에...

갖은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정말 힘든 점이 있거든요.

피, 하지만 돈 많이 벌잖아요!

... 그렇게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차별화된 광고!
여기, 「대한변협신문」이 있습니다.
광고문의
2087-7754

대변인 논평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현직 부장검사가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들의 몸을 더듬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해 물의를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검사로 임용되어 실무수습 중인 검사가 집무실에서 주말에 심문을 명목으로 피의자를 불러놓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희대의 사기꾼 피의자로부터 8억원 가까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명예스럽게 구속된 부장검사 사건으로 검·경간에 수사권과 신빙 확보를 두고 불편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더욱 낮뜨겁기만 하다. 검찰 스스로 중수부 폐지를 언급하고, 현직 지검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고, 물가 변동을 따라가 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박봉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면 지역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연루될까 두려워 2년마다 전국 각지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검사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법치가 바로 섰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와

같은 그들의 노고를 무색하게 할 만큼 곱지 않고, 커다란 실망으로 가득 차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골쇄신하여 흐트러졌던 검찰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조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하는 최전방의 전사로서 법과 원칙,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12. 11. 23.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정태원

대 변 인 노영희

대 변 인 최진영

변호사가 사는 법



황정근 변호사

어제의 소수의견이 오늘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여야 하는 이유, 소수의견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해안 바닷가를 관할하는 조그만 법원에서 형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던 1993년의 일이다.

말은 사건의 죄명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이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위헌제청신청이 없었음에도 직권으로 자신만만하게 위헌제청을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나와 같이 위헌론에 선 재판관이 1명도 없다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 9 대 0이러니.

나의 헌법해석능력과 판단력에 대해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사실 단독판사로서 처음 위헌제청결정을 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무참히 기각되자, 앞길이 창창한 청년법관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상당히 의기소침해졌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6년이 지난 후인 2010년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내가 받은 1994년의 합헌결정을 폐기하였다(2010. 9. 30. 선고 2009헌바2 결정). 이번에는 반대로 6 대 3이다. 나의 견해가 17년 만에 다수의견이 된 셈이다.

어제의 소수의견이 오늘의 다수의견이 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던 의견, 나의 의견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된 것이다. 나의 생각

오늘의 소수의견, 내일의 다수의견

않고 3중 자망어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본 적이 없는 사건이라 궁금하기도 하여 하나하나 검토하여 보았다.

죄명부터가 이상했다. 무슨 포고령이나 긴급조치 위반도 아니고, 죄명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대통령령 위반죄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수산업법 관련조항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제2항의 벌칙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범죄구성요건 해당 여부나 처벌 여부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이다.

나는 수산자원보호령의 모법인 수산업법 제52조 제2항, 제79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하였다(1994. 6. 30. 선고 93헌가15,16,17 결정).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과 아울러 시간적 적응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형벌의 종류와 그 범위는 확실히 정하여져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그 대강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수권법률에 구

과 판단이 결국 옳았다는 것이 인정되어 나로서는 명예회복이 된 셈이다.

그러나 몇 가지 개운치 않은 생각은 남는다.

2010년 위헌결정을 보면, 사건명이 '헌바' 이고, '국선대리인' 이 선임되어 있다. 법원이 1994년 합헌결정을 원용하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는 것, 그래서 남해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개 어부 피고인이 변호사도 없이 직접 헌법소원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2009년 4월 22일 법률 제9627호로 '수산자원관리법' 이 제정된 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것.

나는 후배변호사들에게 법률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강조한다.

“어제의 소수의견,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다. 판례를 묵수·추종할 것이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으면 판례 변경을 주장해야 한다. 헌법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민문기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개진하면서 판결문에 적은 유명한 문장이 있다.

“한마리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jghwang@kimchang.com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여성 41.7% ... 역대 최고

법무부가 지난 21일 올해 제54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506명을 발표했다. 남자는 295명(58.3%), 여자는 211명(41.7%)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석합격은 서울대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호영(22)씨가, 최고령 합격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동훈(42)씨가, 최연소 합

격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인 박지원(20·여)씨가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전체 합격자의 21.5%인 109명, 고려대(82명), 연세대(72명), 한양대(41명), 성균관대·이화여대(각 38명), 경희대(17명), 경찰대(12명), 중앙대(11명), 건국대(8명) 순이었다.

합격자 중 법학전공자의 비율은 전체의 85%가 넘는 433명이었으

며, 비전공자는 73명에 불과했다. 올해 사법시험 최종 전형에는 올해 2차 합격자 502명과 지난해 3차 불합격자 7명 등 모두 509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탈락했다.

한편, 2013년 선발 예정인원은 300명이며 내년 1월 3일부터 11일까지 원서 접수, 2월 23일 1차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사설

권력의 추태를 고발하는 변호사의 용기

변호사의 역할은 다양하다. 11월 20일 정모 변호사가 검찰에 연락해 담당검사의 인권유린을 진정했다. 왜 아무도 없는 검사실에 여성피의자를 불러 성추행을 했느냐는 취지다.

초임검사는 그 외에도 모텔에 그 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는 검사가 되기 전부터 문제 많던 로스쿨생이었다. 권력을 가지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철없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같은 반에서 공부한 로스쿨생조차 그는 검사를 해서는 안 될 인격이었다고 확신했다. 그를 선발한 법무부의 평가는 함께 공부하던 로스쿨생들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눈만큼 도 되지 못했다는 소리다.

변호사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혀 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현실에서 변호사가 인권유린의 모습을 보고 외면하는 경우도 흔했다. 권력기관과의 마찰이 두려운 것이다. 한번 찍히면 앞으로의 변호사의 생활에 지장이 있다. 은근한 압박도 흔했다. 검찰이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앞으로 변호사들이 고발하는 용기가 더욱 요구된다. 그게 사회정의고 인권옹호다. 고문을 당한 경우가 치유될 때까지 접견금지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그때 유일하게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게 변호사다. 물론 구치소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를 억지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녹음이나 촬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의 눈과 입 정의감은 막지 못한다.

개인 변호사의 목소리는 작지만 효과는 클 수 있다. 청송 교도소에는 속칭 맥방이라는 햇빛을 차단해서 수용자에게 고통을 주는 시설이 있었다. 15년 전쯤 한 개인 변호사가 그런 인권유린을 글로 세상에 고발하자 맥방이 슬며시 없어졌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1호 판정을 받은 죽음도 역시 변호사가 세상에 고발한 것이다. 몇 년 전 검찰의 수사관들이 입건된 경매전문가의 기술을 빌려 투기를 한 사건이 주요 방송에 보도됐다. 역시 담당 변호사의 용기덕분이었다. 변호사의 고발은 세상이라는 법대 앞에서의 훌륭한 변론이 아닐까.

대한변협신문 ©2012 2000년 3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06743

대한변호사협회 발행인 신영무 협회장 편집인 엄상익 공보이사 인쇄인 최낙관

- 대표전화 02) 3476-4000
- 팩시밀리 02) 3476-2771
- 기교·기사제보 02) 2087-7752
- 구독·광고문의 02) 2087-7754
-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 전자우편 news@koreanbar.or.kr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협회			
총무	과	02)	2087-7715
무제	과	02)	2087-7722
회계	과	02)	2087-7733
인사	과	02)	2087-7743
홍보	과	02)	2087-7793
수호	과	02)	2087-7754
심사	과	02)	2087-7762
사업	기획과	02)	2087-7772
국제	과	02)	2087-7784

대한변협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변협만평

이우정



수저보.

장애인 인권운동가 故 김주영 씨를 추모하며

빨간 운동화

/ 임준호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신과 함께한 세월은 행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 바라보는 눈길에서,
그 먼 옛날 함께 달리던 가슴 벅찬 순간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벚꽃 흐드러진 봄날
가로수 밑을
밤새 끝도 없이 걸었을 때에도,
장마비 시원스레 지나간 후
활활 쏟아지는 계곡물을 따라 헤매일 때에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끔찍한 사고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상이 당신에게 등급을 매겨
유리벽에 가두었을 때에도
당신은 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언제나처럼 머리맡에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지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사지를 움직이지 못해 품에 안을 수 없을 때
애정이 담뿍 담긴 당신의 눈길만으로도
한 없이 당신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그 거리의 불빛과 사람들,
계곡과 시냇물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허용한
6시간의 도우미가 돌아간 후,
그 순간을 숨죽여 기다렸던
화마(火魔)가 스멀스멀 기어나와

홀로 남은 당신을 향해 다가오던 그 순간에도,
당신은 세상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버리지 않았지요.
커다란 주머니가 다 찬 다음에도
더 많이 가지려고 외면한 채 발버둥치는
병든 인간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그들에게 등급을 매겨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탐욕과 질병을
자애로운 미소로 골고루 감싸주려고 했지요.

스틱을 입에 물고 간절히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 시간의 무게에
당신의 가슴은 천길 낭떠러지로 향하고,
다섯 발자국을 넘지 못해
당신의 눈빛에서
점차 희망이 사라지고
대신 절망과 체념이 밀고 들어오던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머리맡에 있던 절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똑같이
손을 맞잡고 힘차게 들판을 달리던
그 가슴 벅찬 시절을 회상하였지요.

하늘은 어둡고 칼바람은 매서운데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안녕.



뇌병변 장애가 있었지만
정신만은 한없이 맑았던 사람.
대한민국으로부터 1급장애인으로 등급 매겨졌지만
6시간의 간병인만 허용받고 나머지 시간은 홀로
방치되어 다섯 발자국을 넘지 못해 지난달 26일
화마(火魔)에 스러져간 33살의 아름다운 여인.
김주영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영전에 바칩니다.



제5회 헌법소송아카데미 개최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변호사교
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헌법소송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5회째를 맞은 이날 강의에서
성기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분야 헌법소송'을
주제로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
입법의 금지, 직업의 자유, 재산
권, 조세관련법률 등에 관해 설명
했다.

이어 열린 전종의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분야 헌

법소송(가족, 교육, 노동, 사회보
장 등) 강의가 이어졌다.

대한변협은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헌법 강의가 필요하다
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9
월 헌법소송아카데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헌법소송의 적법 요
건과 주요 기본권 항목 등을 집중
교육해오고 있다.

총 6회 과정으로 기획됐으며,
내달 4일에는 종강식을 겸한 마
지막 강의를 진행한다.

등 정

7754)

결 혼

부 음

- ▷양경석 변호사(서울회 · 53년 생) 장녀 민혜, 강재영 변호사(서울회 · 81년생) 본인=11월 24일(토), 02)599-2580, 6200-1600
- ▷임동호 변호사(서울회 · 80년 생) 본인=12월 2일(일) 오후 2시 부산 헤리움웨딩홀 컨벤션홀, 02)3482-0871
- ▷김제일 변호사(서울회 · 54년 생) 장남 김경래 변호사(서울회 · 82년생) 본인=12월 7일(금) 오후 7시 더 라움 2층 마제스틱 볼룸, 02)=595-9700, 772-4000

- ▷김철기 변호사(서울회 · 63년 생) 부친상=11월 12일(월), 02)711-1185
- ▷조병홍 변호사(대구회 · 52년 생) 부인상=11월 15일(목), 053)756-7500
- ▷이문수 변호사(서울회 · 68년 생) 빙모상=11월 15일(목), 02)595-7007
- ▷박경찬 변호사(대구회 · 75년 생) 부친상=11월 20일(화), 053)743-0034
- ▷강명구 변호사(대전회 · 66년 생) 빙부상=11월 21일(수), 042)482-2900
- ▷양희선 변호사(대전회 · 72년 생) 부친상=11월 21일(수),

※ 문의: 협회 홍보과(02-2087-



www.rainbowlaw.or.kr

결혼이민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온라인법률상담센터

www.rainbowlaw.or.kr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다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국 100여명의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분야별로 상담 해드리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의 법률구조로 연결해드립니다.

상담 분야

- 국적법
- 출입국관리법
- 결혼중개업법
- 형사법
- 민사법
- 가사법
- 행정법
- 기타

상담 방법

www.rainbowlaw.or.kr 로 방문

↓

원하는 언어선택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 선택)

↓

공개 상담 혹은 비공개상담으로 상담 글 게재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답변 도착 알림)

↓

변호사 답변 완료

쓴소리 바른소리



나승철 변호사

얼마 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A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신청 서류를 대한변협에 전달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방변호사회의 경우 변호사 등록거부 권한 자체는 없고, 단지 대한변협에 등록신청 서류를 전달하면서 거부 의견을 첨부할 권한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변호사 등록과 관련한 법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변호사

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회 및 등록심사 규정'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규 중에서 그 효력 순위가 가장 낮은 최하위 규범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거부 권한을 규정한 '입회 및 등록심사 규정' 제6조 제1항은 등록신청시 지방변호사회를 경우만 하게 되어 있는 변호사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변호사등록 권한을 가진 대한변협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그뿐 아니라 '입회 및 등록심사 규정' 제8조에서는 지방변호사회의 등록거부 권한을 규정한 제6조와는 달리 "회장은 등록이 타당하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등록 등의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회협회에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거부권이 없음을 전제로,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등록신청서류 전달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회장의 변호사등록 거부 권한을 규정한 제6조와 상충되는 조항인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 거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회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단지 경유기관에 불과하고, 변호사 등록 거부 권한은 대한변협에만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68조 제2항은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 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가입하려는"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소속 변경등록이 되면 어느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될지는 전적으로 그 변호사의 의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거부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변호사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최고규범인 회칙에도 지방변호사회의 등록거부 권한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및 등록심사 규정' 제6조 제1항에 "회장은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또

법 제8조 제1항은 등록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A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상 등록거부에 해당되는 사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등록거부 권한이 없고, 단지 대한변협에 등록신청 서류를 전달하면서 등록거부 의견을 첨부할 권한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등록거부를 한다고 하면 '등록거부 의견 첨부'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권한이 없음에도 A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신청 서류를 대한변협에 전달하지 않은 행위는 분명히 권한남용이고,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대한변협의 무능함은 더욱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대한변협은 여지껏 사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8월에 소속 변경등록 신청을 한 A 변호사는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회원들의 시름만 깊어가는 2012년 가을입니다.

rsc413@thegreenlaw.com

신임 전북회장에 김 영 변호사



김영 신임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67차 정기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총 117표 중 무효표 2표를 제외한 115표

를 얻어 당선됐다. 또 부회장으로는 유길중 변호사가 선출됐다. 김 회장은 "변호사는 지역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법률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을 위한 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변호사는 지역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법률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을 위한 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학교폭력, 입학비리...법정공방 치열

법무부는 15일 일산 킨텍스 대회 의실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김덕현 대한변협 부협회장, MBN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민사 118팀, 형사 201팀 등 모두 319개 팀을 심사, 이중 30개 팀(5개 권역에서 민·형사 각 3팀)으로 예선을 치렀다.

이날 예선을 통과한 전국 12개 팀은 '폭력조직과의 전쟁을 치른

배트맨'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 등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로 모의재판을 펼쳤다.

열띤 경연 결과, 민사부문 대상은 학교장이 손자의 명문대 진학을 편법지원한 입학비리 사건에 대해 공방을 펼친 진주 중앙고 '가온' 팀이, 형사부문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주제로 진성고 '느껴봐 법&soul' 팀이 차지했다.

한편 변협은 이번 대회에 150만원을 후원했으며, 김덕현 부협회장이 삼량고 '활의당' 팀에게 민사부문 금상을 수여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밀어준 손을 잡고 벼랑 끝에 선 이가 안전한 세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준 한마디 위로가 이웃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기부하시면 억울함에 울고 있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 소중하게 바르게 쓰일 것입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재단 알리기"를 통해 재단 사업 및 예산의 투명성을 매주 알려드립니다.(www.legalaid.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공식성 기부금 대상 단체이며, 2010년부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대한 기부는 변호사법상의 변호사공익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기부 방법: 일회 기부 및 정기 기부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www.legalaid.or.kr)의 기부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 계좌: 신한은행 140-007-031299
- 기부에 관한 문의는 전화: 02-3476-6511 팩스: 02-3476-6512 이메일: jung07@koreanbar.or.kr입니다.

변협, 건강보험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이 22일 서울 서초동 벤처 리퍼블릭 지하 1층 블루룸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괄수가제 도입 및 적용범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임의비급여의 적법성이나 그 허용요건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비롯한 법원 측 15명과 위철환 회장 등 경기중앙회 측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양측은 제반 업무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둑대회 개최

한편 경기중앙회는 지난 19일 경기중앙회 사무국에서 위철환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A·B조로 나눠 진행됐으며 안상순·나기주 변호사가 각각 A·B조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중앙회-수원지법 간담회 개최

경기중앙회(회장 위철환)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원장 서기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기석 법원장을



법률강습회'를 개최했다. 부산회는 기업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운영,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률강습회'를 열어 오고 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 참여

한편 지난 17일 부산회는 소속 변호사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주도로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매달 부산법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해오고 있다.

부산회, 기업체 대상 법률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법변호사회(회장 장준동)는 지난 16일 부산 변호사회관에서 예

변협, 2013년 기사년 달력 제작

30일까지 추가구매 신청 받아

대한변협이 2013년도 기사년 달력을 제작해 12월초 전국 회원에게 배포한다.

3단 형태의 벽걸이용으로 제작된 이번 달력은 서울 회원에게 1부, 서울을 제외한 13개 지방 회원에게 2부, 법무법인과 공증인 가합동법률사무소 등 법인 회원에게 각 1부씩 배포된다. 또 변협은 기본 제공 달력 외에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제작 실비(1부당 1500원)만 받고 달력을 판매한다. 추가 구매 신청은 이번달 30일까지이며,

신청 부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 계좌(신한은행 398-03-004139,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로 입금(입금 시 '달력 회원명'으로 기재)하면 지방회 수령 또는 착불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달력은 변협의 사회정의 실현의지와 열정을 매달 다른 색상으로 표현하고, 국민 결의로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문구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협회 홍보과(담당 조경민 대리, 02-2087-7751)로 연락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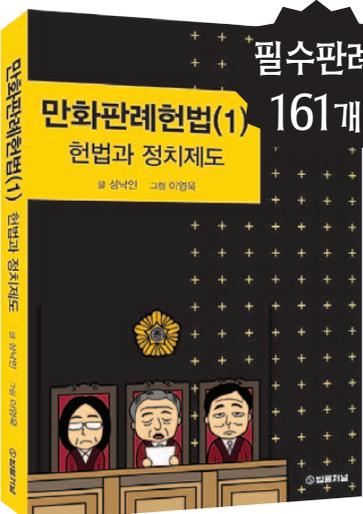
대구회, 불우이웃돕기성금 기탁

대구지방법변호사회(회장 김종기)는 회원들로부터 올해 10월분 성금으로 625만원을 모금해,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대구여성회 청소년성장캠프의 후원금으로 각각 200만원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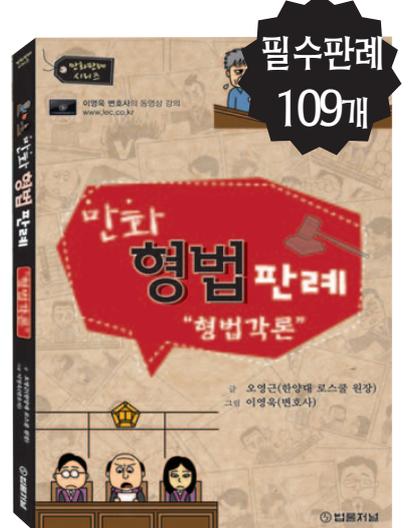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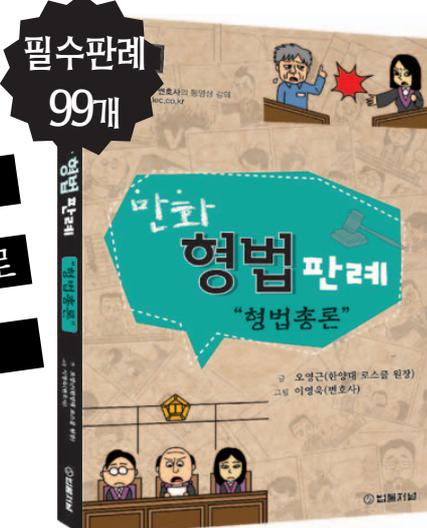
또 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사랑

의 급식후원기금으로 225만원을 기탁하고, 아울러 내달 4일 지역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키로 했다. 1998년부터 뜻있는 변호사들끼리 성금을 모금해 온 대구회는 11월 현재 총 8억여원을 불우한 이웃에게 기탁했다.

8컷 만화로 중요 판례가 술술 풀리네~~~



<만화 판례 시리즈> 만화와 함께
사실관계 → 결정요지 → 해설로
알기 쉽게 설명



글: 성낙인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그림: 이영욱(변호사)

글: 오영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그림: 이영욱(변호사)

‘금품수수’ 김광준 검사 구속...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민주당, 법무장관 등 사퇴하라 논평

한상대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 총장은 사과문에서 “오늘 부장급 검사가 거액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된 데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검찰 시스템을 점검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면적이

고 강력한 검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합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 지휘부 전체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을 정권의 파수꾼으로 전락 시킨 권재진 법무장관 역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국회 차원의 논의에 검찰 개혁의 방향을 맡기고 개혁안을 수용해 검찰을 근본부터 쇠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법률사무중사기관에 지정

앞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고용노동부에서 6개월 동안 법률사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중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고용노동부에는 지난달 특채로 고용된 변호사 45명과, 예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기존 변호사 특채 사무관 9명까지 모두 54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다. 이는 법원, 법무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600여개 법무법인과 비교해도 18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45명의 변호사를 내년에도 재계약해 그대로 고용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을 채용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분쟁 해결지원팀’을 구성·운영하게 된 것은 매년 30만건에 이르는 노동분쟁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동행정 서비스의 전문

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호사 등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고용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고문변호사 1명 증원하기로

제주도가 올해 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고문변호사 1명을 증원하고, 다양해진 소송사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밝힌 ‘소송현황(민·형사 포함)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24건, 2008년 233건, 2009년 238건, 2010년 238건, 2011년 246건, 올해 10월 현재 240건으로 도 관련 소송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과 고문변호사를 증원해 도·행정시별 행정처분 전 또는 민사소송 제기시 처분요건·쟁점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 전국 첫 시행

만 13세 이하 자녀 둔 부부 대상

다음달부터 부산 내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20일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제도’와 ‘후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나 부모교육,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 후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이혼이 가능해진다. 즉, 이 같은 과정을 밟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3개월)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혼이 불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7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13쌍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한 결과 13쌍이 모



두 마음을 바꾸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조만간 다른 지역법원들도 잇따라 이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의무실시하기로 한 자녀양육안내는 집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반해 부산가정법원이 실시하는 협의이혼 시 상담은 전문가에게 개별적인 맞춤형 상담을 받는 것으로, 전국 법원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2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다음달 12일 서울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개성공단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제1회의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공동브랜드화 방안’을 주제로 최원동 중소기업유통센터 본부장이 ‘국내 공동브랜드 도입 목적과 운영 현황’에 대해, 김미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공동브랜드 필요성 및 여건 평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제2회의에서는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개성공단 외국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성공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제도 정비방향’,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

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회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jmb14@kookmin.ac.kr, 010-6344-6647)에게 문의.

전남대 법학연구소 정보법센터 2012년 학술대회

전남대 법학연구소 정보법센터가 30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콘퍼런스홀 법학관 302호에서 2012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제와 판례의 최근 동향’을 대주제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불균형적 시각과 문제 상황에 대한 비판’, 함인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 관련판례의 분석’, 배대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잃어버린 사회적 평판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062) 530-0693로 문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 안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법률상담과 교육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상담 및 법률 교육 ◀◀◀

- ◆ 상담대상 : 북한을 벗어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자
- ◆ 교육대상 :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 ◆ 상담내용 :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일반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상담 (법률구조 포함)
- ◆ 교육내용 : 민·형사, 노동, 사회보장, 세금 등 일반 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률상식 등 교육

■ 문의 :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대한변협 인권과 전화: (02)2087-7733, 팩스: (02) 3477-4009 E-mail : humanrights@koreanbar.or.kr)



즐거운편지



김치중 변호사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는 직업에 따라 맡는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피고인을 둘러싸고 수사경찰관, 검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중 법조인인 검사, 판사, 변호사만 놓고 보면 그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범죄내용 때문에 그 사건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변호사는 법이 요구하는 역할,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수 있었고, 어느 정도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법조인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처럼 분명하고 중요한 원칙이고, 법조인들 스스로 유리하게 원용하여 오던 원칙임에도 이것을 벗어나려는 법조인들의 시도는 너무 자주 눈에 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의 대부분은 부정한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보여 비난하거나 바로잡기가 더 어렵다. 물론 부정한 경우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있더라도 감추며 하는 탓에 눈으로 확

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엇이든 찾아내서 처벌하려고 한다면? 고소, 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혐의가 떠오른 것도 아닌데 피의자 주변을 저인망식으로 훑는 수사를 하는 경우 등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일 것이다.

문제는 그 걱정과 판단이 맞는 경우도 많겠지만 틀리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것인데, 틀리는 경우의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크고 깊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사법제도는 틀리는 경우에 주목하며 '제발 제 자리 좀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좋게 상상해 보면 앞의 변호사도 정의감에서 그랬을지 모른다. 직책상 어쩔 수 없이 변호는 하지만 사건 내용을 알고 나서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 가족들의 손을 빌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역시 같은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월의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습이 확인되곤 하는 탓에 큰 소리로 비난할 자신은 없지만, 여기 저기서 그런 위험이 자주 눈에 띄니 달라진 세상에 기대며 한마디 하고 싶어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욕심내지 말자고, 사법절차에서의 과욕은 그것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위험하니까.

kcjlmh@barunlaw.com

제자리 지키기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원칙에 어긋나게 행동한 변호사는 그 의도나 결과에 관계없이 비난받게 되는 것이다.

법조 지역의 이런 특수성은 어떤 시기에는 법조인들의 마음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던 것 같다. 악법에 따라서도 재판을 하여야 하는 숙명을 지닌 법조인에게서는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설명해주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위안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법에 의하여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만하면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본적 소임은 다한 것이라고 주장할

인하기가 쉽지 않을 터이니, 결국 눈에 띄는 흔한 경우는 오히려 선의나 소박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관여하는 절차에서 불의가 살아남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것처럼 느껴진다.

공판검사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어 죄인이 처벌을 벗어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판사가 검사에게 "김OO를 증인신청하지 않나요?" "공소장을 바꾸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 경우, 피의자가 교묘한 품수로 범망을 피해간다고 판단한 검사가 '어쨌든 악인

얼마 전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던 중 '변호사가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편?'이라는 칼럼이 눈에 띄었다. 그 칼럼을 쓴 기자는 '변호사의 직무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일'이라며 국선변호사가 고소인들에게 피고인이 높은 형을 선고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조언하는 것을 들었다며 개탄하고 있었다.

사실 그 보도가 정확하다면(오늘 이 글을 쓰느라 검색해보니 제목은 뜨는데 기사본문 검색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 변호사가 황당한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는 데에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단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지방네트워크 부산회



김외숙 변호사

옛날 이야기

세월이 참 빠르다. 큰애가 만 17세가 되었고 아파트 반장 아주머니가 주민등록 서류를 들고 왔다. 제 어머니가 변호사 시작할 때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녀석이 벌써 공적인 신분증을 갖게 된단다. 정말 쓴 화살 같은 시간이다. 갓난애가 내 키를 훌쩍 넘도록 자랄 동안 나도 어영부영 나이를 먹어 왔음이 새삼 돌아보였다.

변호사 나이로 따지자면 나는 올해 성년이 되었다. 1992년 2월에 변호사를 시작했으니 이제 만 스무살을 넘은 것이다. 물론 일해 온 기간만큼 변호사로서의 내 능력이 같이 성장해 오지 못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하여 성년이 되었다고 드러내어 말하기는 내심 부끄럽기도 하다. 그저, 빠른 세월만큼 많이 변한 세상에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20년 전, 대한민국에는 여성 변호사가 나까지 포함하여 모두 21명이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중 19명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이 부산에 있었다. 그럼 다른 지역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여성 변호사의 수만 해도 40명대에 이른다. 20년 전에 비해 20배 늘어난 셈이다. 이런 증가 수치는 다른 지역 변호사회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여성 변호사의 희소성은 아주 먼 옛

날이야기가 된 듯하다. 대신에 연령층, 개성과 분위기, 재능에 있어서 다양한 여성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 다른 지역의 법정에서 보게 된 낯선 변호사의 뒷모습은 내가 따라잡지 못한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하였다. 그녀의 염색한 머리는 황금빛 보리밭을 생각나게 하는 환한 빛깔이었다. 솔직히 처음 본 순간, 법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싶었다. 그러나 곧 이어 '내가 늙긴 늙었구나' 하는 자조가 마음속에 저절로 일어났다.

법정을 다니기 시작한 초기에 나는 한 선배 변호사에게 변호사로서의 옷차림에 대해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다. 그때 선배의 대답은 간단했다. "바지만 안 입으면 돼."

하지만 왜 치마 정장만 입어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동의할 수 없었던 나는 선배의 조언을 무시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왜 황금빛 머리카락은 안 된다는 것인지 반문한다면 할 말이 없음을 나는 이내 깨달았다.

선배에게 내가 변한 세상의 한 단면이었다면 내게 그 낯선 변호사가 그러하였다. 세상이 저만치 앞서 달아날 때 한참을 뒤쳐진 채로 탄력을 잃고 굳어져 온 마음과 생각의 노화 상태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여성 변호사가 드물었던 그 옛날,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 변호

사로 대접받으려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기도 했다.

한번은 일찍 법정 도착해서 변호사 대기석에 앉아 개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정리가 가만히 다가오더니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변론기일이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 딱 두 가지로만 정해지던 그 시절, 부산의 작은 법정은 늘 만원이었다. 한꺼번에 당사자와 증인, 방청객이 몰려드니 방청석에 자리가 없는 때가 다반사였다. 서 있던 사람들을 비집고 내가 변호사 대기석인 긴 의자 한쪽에 가서 앉자 용기를 얻은 방청객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더니 나머지 자리를 다 채워 버렸다. 비어 있었지만 일반 방청객을 위한 자리는 아닌 듯해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혀 변호사 같아 보이지 않던 나를 따라 한 행동이었다. 나중에 온 변호사들은 방청객들에게 비켜 달라 말하기도 뭣해 어정쩡하니 옆에서 있어야 했다.

내 잘못이 아님에도 영문을 아는 나로서는 괜히 미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보면 굳이 변호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변호사로 알아봐 주는 소위 '변호사스러움'에 갈급해 하지 않을 수 없던 시절이었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젊은 여성 변호사의 존재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들은 옛날처럼 외적인 '변호사스러움'을 갖추려 조바심 내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그보다는 내적인 '변호사다움', 20년이 지난 내게도 여전히 달성해야 할 과제인 변호사다운 변호사가 되는 것만 고민하면 되겠다.

busandike@yahoo.co.kr

이제 여성 변호사의 희소성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됐다
젊은 여성 변호사들은 외적인 '변호사스러움' 보다 내적인 '변호사다움' 을 갖추려 고민하면 되는 시대다

클래식과 친구하기



하죽봉 변호사

오페라, 오페라

지난번에는 무겁고 어두운 실내악에 대해 얘기했으니 이번에는 그 반대인 밝고 즐거운 오페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희곡이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중국이나 일본도 희곡작품이 많은데 희곡은 연극 대본이므로 결국 연극이 발달되고 성행하나 우리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연극은 군자나 양반이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니라 고루한 사상이 근대까지 지속되었고 그 영향으로 음악에서도 오페라의 연극성 때문인지 다른 장르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보입니다. 즉, 오페라는 가벼운 음악이라고 치부하는 데 그 까닭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구에서 오페라는 일반 콘서트와 동격으로 대접을 받고 있으며 작더라도 유서 깊은 도시의 경우 오페라 전용관과 전용 오케스트라는 필수입니다. 유명한 지휘자는 오페라 지휘에서부터 커리어를 시작하며 평생 콘서트와 오페라 지휘를 병행합니다. 오페라만 공연하는 페스티벌도 여러 개 있고 그곳 부자들의 꿈은 오페라 시즌 내내 로열석에서 감상하고 후원자란에 이름을 올리는 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페라단이 경향 각지에 10여개 있으나 시즌에 두 작품 올리기에 급급합니다. 이전에는 코벤트 가든 오페라 등 외국의 유명 오페라를 신문사가 초청하는 공연이 더

러 있었으나 최근에는 흥행이 안 되는지 몇 년전 게르기예프가 이끄는 마린스키 오페라단에 의한 링 4부작 이후 뜸합니다. 대부분의 오페라가 CD나 DVD로 나와 있으므로 공연에 가지 않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페라 마니아는 혼자 대본을 보면서 디스크를 통한 감상만 고집하기도 하나 DVD가 역시 편리하고 메트로폴리탄의 작년과 금년의 공연은 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는 연극과 음악이 합쳐진 형식입니다만 역시 음악이 주이므로 연극이 아닌 음악의 한 장르로 취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주되는 작품은 100여곡 전후이고 자주 찾는 곡은 모차르트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오페라는 음악 장르 중에서 가장 공연성이 강하므로 작곡가가 이름을 떨치기에 최적입니다만 그 공연성이나 대중성 때문에 오페라를 기피한 작곡가도 있습니다. 브람스, 브루크너, 말러가 그렇고 한 악기에 치중한 쇼팽, 리스트, 파가니니가 그 예입니다. 한편 오페라 일반도로 간 도니제티, 로시니, 베르디, 바그너, 푸치니는 정반대이지요.

오페라는 1시간 내외의 단막짜리부터 4시간 이상 걸리는 대작까지 있으나 보통 1막당 30분 가량의 3, 4막 구성으로 2시간 전후이고 공연은 휴식시간까지 합하여 3시간이 넘습니다. 따라서 오페라 한 곡을 감상하려고 해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므로 초심자는 오

페라에 친근해지는 방법이 없을까 찾게 됩니다. 물론 많이 듣고 보는 것이 왕도이지만 먼저 오페라의 진수인 아리아와 합창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한 아리아와 합창은 영화나 방송에 자주 나와 이미 친근해진 곡입니다. 흔치는 않지만 남녀 이중창판과 동성 이중창판도 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관현악 발채곡입니다. 서곡부터 시작하여 아리아, 중창, 합창, 전주곡, 간주곡 등을 관현악으로 편곡(조곡)하여 그 오페라의 진수만 듣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카르멘조곡이지요. 리스트는 오페라 작곡가에 대한 경의로서 아리아등을 피아노로 편곡하였는데 리골레토의 4중창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가씨'는 원곡 못지 않습니다.

오페라는 가볍고 쉽게 들을 수 있다는 통념에 반하는 게 바그너의 작품입니다. 음악극이라고 불리는 그의 오페라는 마력이 있어 한번 받을 디미었다하면 이후 바그너의 경배자, 즉 '바그네리안'이 됩니다. 여타의 오페라보다 길기도 하고 친근하지 않은 선율과 화음으로 가득한 그의 작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관현악곡집과 합창곡집이 제격입니다. 특히 링 4부작의 진수를 모은 관현악 모음으로 전곡집에서 뽑은 솔티판을 두세번 들으면 어느새 바그네리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리아와 합창이 없는 파격적인 곡으로서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는 반드시 들어볼 독특한 작품입니다. 당대의 사조인 상징주의를 음악에 집어넣은 묘한 곡으로서 DVD만도 시즌에 4, 5개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카리안의 CD가 최고입니다.

jbha777@yahoo.co.kr

오페라는 1시간 내외의 단막부터
4시간 이상의 대작까지 있어
감상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초심자는 오페라의 진수인
아리아와 합창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 숲



박수연 변호사

감기는 내 운명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감기라니 흥미로워 ... 감기를
알미운 불청객으로 홀대할 게
아니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반가운 인사 한번쯤 건네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또 어김없이 그분이 찾아오셨다. 딱 막힌 코 때문에 머리는 멍하고 눈앞은 어질어질하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건만 몸은 내 것이 아닌 듯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다. 생각해보면 기억이 닿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찬기운이 돌 때면 항상 감기로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감기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 일상의 행복을 한 움큼 뺏기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감기는 무조건 빨리 떠나보내야 할 괴로운 손님처럼 여겨지곤 했다.

헌데 감기를 핑계로 집안일도, 육아도 잠시 미뤄둔 채 침대에서 뒹굴다보니 예전에 읽었던 감기에 대한 책 한 구절이 떠오른다. 동의보감을 고전평론가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그 책에서는 '감기는 나의 운명'이라고 명명했었다.

모든 존재는 천지만물이 벌이는 기운들의 각축 속에 살고 있기에, 산다는 것은 몸과 외부 사이의 '기싸움'이라 한다.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한 이 기싸움은 결코 멈출 수 없고, 삶이 있는 곳에 늘 병이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특히 감기(感氣)는 그 의미 자체가 '외부의 기에 감응한다'는 의미이니, 모든 병은 감기의 변형이나 마찬가지로 지라 했다.

감기가 곧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니 참 흥미로운 해석이다. 사실 태어나서 가장 처음 앓는 병도 감기이고 죽을 때 가장 많은 병도 감기이고 보면, 생사를 함께하는 병이라는 의미가 낯설지만은 않다.

고민으로 밤새 괴로워할 때, 아픈 이별을 경험할 때, 과로와 음주로 몸을 돌보지 않을 때, 그것은 수시로 찾아와 굶이굽이 인생 고틱을 함께하기도 한다. 또한 아무리 빨리 털어내고 싶어도 제 스스로 떠나기로 마음먹을 때까지 반드시 일정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

그리고 보니 감기를 알미운 불청객 정도로 홀대할 게 아니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반가운 인사 한번쯤 건네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 마음을 바꾸고 보면 감기도 그저 괴로운 병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게 지탱해주는 사랑의 전령이자, 분수를 잃고 날뛰는 내 욕심과 무절제에 경종을 울리는 현자인지 모른다.

어린 시절 호된 감기를 앓던 기억에는 항상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함께였다. 엄마는 "에고, 내 새끼야" 라고 안타깝게 나를 부르며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쓸어주셨다. '내 새끼' 라는 그 원초적이고 사랑스러운 호칭을 듣고 있으면 감기를 견디기가 훨

씬 수월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감기로 밤잠을 못 이룰 때 작은 몸을 품에 꼭 안고 달래다보면, 내 입에서도 자연스레 "에고, 내 새끼야"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감기를 낮게 하는 건 약도, 밥도 아니고 엄마의 그 애정 어린 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면, 마치 감기를 통해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느낌이다.

성인이 되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감기는 매번 내 발목을 붙잡았다. 아니,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었다. 젊음이 좋아 미친듯이 밤을 새우고, 사람이 좋아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일이 좋아 무턱대고 일을 떠맡다보면 덜컥 감기가 찾아왔다.

기운이 팔팔할 때는 세상이 만만해 보이다가도 감기로 기력이 빠지면 비로소 나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너무 기세등등 살지는 않았는지, 과하게 무리하지는 않았는지, 못 견디게 외롭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곤 내 역량을 넘어서는 것들을 털어내고 나면, 보다 본질적인 것에 충실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느새 감기는 제 일을 마치고 조용히 사라지고 없었다.

sypark@seoulbar.or.kr

연구논단



차형근 변호사

공직선거법상의 반론청구권 등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할 시는 언론매체에 의한 후보자나 정당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사가 후보자나 정당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기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어 공직자를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사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수단인데 그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통상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의 경과로 선거에 끼치는 영향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어떤 선거의 후보자를 비방하는 기사가 언론매체에 의하여 보도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사전에 그러한 보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여도 이를 막기 위하여는 보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다루는 법원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할 뿐더러 사전금지처분이 인정되면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비방기사가 난 이후에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시도한다고 하여도 통상적으로 2주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거에의 영향을 지울 수가 없다.

게다가 언론 매체가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후보자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의 피해구제보다 보다 빠르고 보다 강력한 방법을 장치하고 있다.

하나는 불공정한 보도에 대한 자체시정 및 후보자가 요구하는 시정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반론보도청구권이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제도가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선시 조그마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2. 제도의 개관 및 실제 운영상황

(1)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 선거기사,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시정요구나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자체심의의 결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방송법 제100조의 제재조치가 과하여 질 수 있으므로 사과문게재, 정정보도문게재,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가 행하여질 수 있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시정요구나 이의신청 사항 중에는 위와 같은 자체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을 뿐더러 반론보도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시정요구제도 이외에 공직선거법은 특유한 반론보도권을 두고 있는데 '인신공격·정책의 왜곡 선전 등' 또는 '왜곡된 선거보도'에 대하여 안 날로부터 10일,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심의위원회는 후보자의 시정요구 또는 정당, 후보자, 언론사 간의 반론보도협의를 불성립되어 회부된 경우 및 자체심의기로 한

경우에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의견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심의의결된 사항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며 이행여부도 확인한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19대 국회의원선거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107건의 자체심의 안전에 대하여 주의 58건, 권고 33건, 경고 11건, 사과문게재 4건, 정정보도문게재 1건의 결정을 하였고, 23건의 시정요구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사과문게재 3건, 정정보도문게재 2건, 반론보도문게재 1건, 경고 3건, 기각 5건, 각하 1건의 결정을 하였다(8건의 시정요구는 취하되었다).

(3)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과

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현행제도의 문제점

(1) 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에는 사과문게재, 정정보도문게재, 반론보도문게재, 경고결정문게재, 주의사실게재, 경고, 주의 등이 있는데 사과문의 게재는 위헌이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2009헌가27 사건에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사과방송이 방송사업자의 일반적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1991. 4. 1. 89헌마160 결정을 되풀이한 것인데 동 결정은 민법 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하나로 이용되던 사죄광고를 위헌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사죄광고와 다를 바 없는 사과문게재는 1991년부터 위헌으로 보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항목에 사과문게재를 포함시켰던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사과문게재를 결정하였던 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잘못된 것이었다.

선거방송·기사심의위 제재조치 중 '사과문 게재' 현재 위헌결정난 사죄광고와 다를 바 없어 위헌 제재대상 '불공정 보도' '왜곡선전' 규정 너무 모호

(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을 해석하면 '불공정한 보도'를 하거나 '인신공격·정책의 왜곡선전'을 한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여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도 보여지나 제재의 전제가 '불공정한 보도' '인신공격·정책의 왜곡선전' 등 애매모호한 조항들이 문제이다.

형법법규는 수범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가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이나 법관의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불공정한 보도' '인신공격·정책의 왜곡선전'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개념도 아니거니와 전문가라 할지라도 특정사항을 인신공격이다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게다가 '불공정한 보도' '인신공격·정책의 왜곡선전'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정당이나 언론인단체 등에서 추천

한 명예직 심의위원들로서 법적소양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보장도 없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려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제재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형사절차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제재조치 불이행에 대하여는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만하다.

(3) 공직선거법 제8조의 4 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은 기존의 반론보도청구권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종전에 알려진 반론보도청구권은 '의견'이 아닌 '사실' 주장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이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4 제4항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을 준용하여 '언론사가 행하는 반론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반론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도 사실적 진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신공격'이나 '정책의 왜곡선전'은 사실적 주장의 경우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 할 수 있는 사항 중에는 반론보도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19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시정요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한 경우도 있었다. 더군다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은 심의요구가 있으면 즉시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직선거법상의 반론보도 관련조항에 비하여 느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별도의 반론보도규정을 둔 것은 의견반론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의견의 보호에 있고 특히 공직자로 취임하려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의견반론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새로운 반론보도청구권은 허용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제2차 대한민국 UPR 참관기

변협,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저울추가 돼야



김병주 변호사 ·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장

유엔인권이사회(HRC:Human Rights Council)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부간 기구로, 유엔총회에서 선출되는 47개 회원국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보편적 정례검토'라고 직역했으나 요즘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라고 의역하고 있다)은 HRC가 창설되면서 새로이 고안된 것으로 유엔회원국 전부를 대상으로 4.5년을 주기로 해당 회원국의 인권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다.

대개 해당 회원국의 정부보고서 제출, 이해관계자들인 NGO, 국가인권기구 등의 보고서 제출,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정보 수집 및 제공, HRC의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2008년 제1차 UPR절차가 진행됐고, 당시 HRC의 이사국들은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양심적병역거부권 인정, 사형제도 폐지,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국가보안법 개폐, 난민협약에 부합되게 난민인정절차 개선 등 총 33가지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UPR 절차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현재 진행 중이다. 우선 올해에는 정부보고서 및 이해관계자 보고서 등이 제출되고, OHCHR에 의한 자료 정리 및 정보 제공 등의 절차, 실무그룹에 의한 정부보고서 심의 및 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가 진행됐으며, 내년에는 HRC에 의

한 보고서 채택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NGO들은 연합하여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2차 대한민국 UPR에 참가할 이사국 대표들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했고, 대한변협은 처음으로 국제인권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별도로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는 작년 하반기에 구성돼 12월에 UPR 및 각종 조약기구 권고사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심포지엄을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와 공동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국제인권특별위는 또 올 4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아동, 난민, 여성인권,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정보보호, 일제시대 정신대 문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OHCHR은 각종 이해관계자 보고서들을 종합,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대한변협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는 우선 대한변협 김종철 인권이사를 지난 9월 27일~10월 5일 제네바로 파견,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팔 등 수많은 이사국 대표들을 만나 심의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했고, 후발대로 필자와 양정숙·장영석 위원, 심은영 인권과장이 제네바로 가서 10월 23~25일 로비활동을 하면서 제2차 대한민국 UPR 절차를 진행했다.

각종 조약기구들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제1차 UPR 등 절차를 참관한 바 있는 필자는 변협 국제인권특별위 위원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OHCHR 스태프인 한국인 우종길 사무관과의 면담을 주선했고, UNHCR(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을 방문,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무담당관 등을 만나 대한민국의 난민제도



UPR 절차가 진행되는 회의장에서 장영석, 양정숙 위원, 한양대 박찬운 교수, 필자(사진 왼쪽부터)

운용실태 및 미안마 등 아시아 지역 난민 문제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10월 25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간 30분에 걸쳐 드디어 HRC 실무그룹의 제2차 대한민국 UPR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 길태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모두 발언, 이사국 대표들의 질의 및 권고, 정부대표단의 중간답변, 계속되는 질의 및 권고, 정부대표단의 최종 답변 등이 있었다.

정부대표단은 모두 발언에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난민법 제정 등 주로 제도적인 성과와 진전에 대하여 강조했다. 이사국 대표들 또한 NAP, ODA 등에 관한 제도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차별금지법, 미혼모에 대한 차별, 출생신고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표현의 자유 등 문제에 관한 진전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대표단은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경우 안보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권고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표현의 자유의 경우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찰력을 사용하는 등 특별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답변은 UPR제도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으로서, 향후에는 좀더 성의 있고 진지한 고민과 답변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됐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실무그룹의 제2차 대한민국 UPR 심의는 마무리됐고, 10월 31일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번 제2차 대한민국 UPR 절차를 참관하면서, 필자는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유엔 인권 활동에 있어서 변협이 감당하여야 할 몫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UPR 및 각종 조약기구의 정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인식 차이가 크면 클수록 변협이 스스로 저울추가 되기를 자임하여 변협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변협의 국제인권특별위가 향후 유엔 인권 활동에 있어서 변협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kbjlaw@one21.co.kr

대한변협, EBS와 함께 온라인 연수 들으세요

- 최고 수준의 전문법률실무강의를 온라인에서 수강 가능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연수 수강
- 탁월한 EBS의 기술을 통한 회원의 개인정보유출 보안 강화

- 장소, 시간 제약 없이 전국 모든 회원에게 연수 기회 제공
- 여학, 경제, 시사 등 EBS가 보유한 양질의 콘텐츠 함께 이용 가능
- 윤리연수 강좌 오픈(현재 채근직 변호사의 '변호사 윤리' 수강 가능)

공지 변호사 의무연수 온라인 이수 시간제한 폐지

종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의무연수를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주기에 6시간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2012년 2월 10일 관련 규정 개정으로 주기별 모든 시간(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변호사연수원에서 더 편리하게 의무연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VENT 윤리연수 강좌 오픈

변호사 의무연수 중 윤리연수에 해당하는 강좌가 오픈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윤리연수 1시간 인정 강좌 집단손해배상소송의 법적 문제 (손창원)	윤리연수 2시간 인정 강좌 변호사 윤리 (채근직)
대한변협 회원 가격 5,500	대한변협 회원 가격 11,000
일반 및 학생 회원 가격 11,000	일반 및 학생 회원 가격 22,000

판례평석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대상판결

(1) 사건의 개요 및 경위

피고(재심원고,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이던 소외 1 등이 소송의 상대방인 소외 2와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10억원을 받기로 하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항소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항소법원은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고 소송종료선언(재심대상판결)을 하고 위 소송종료선언은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배임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제2심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법원은 비록 소외인들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이 있으나 소외 1 등이 항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것으로 항소취하의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항소취하행위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재나440 판결).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크게 두 가지의 점에 대하여 그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①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취하를 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자백'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리인이 문제된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소송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통모하여 가담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② 한편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소송행위에 기초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재심제도의 취지상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서 위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달리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평석

(1) 소송행위의 흠과 소송상 구제방법

통설과 판례는 소송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에는 무효 내지 취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소취하나 상소취하가 착오, 또는 기망 내지 강박에 의한 경우에도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설·판례는 소취하나 상소취하가 사기·강박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한 경우(사기죄, 공갈죄, 강요죄, 배임죄 등)에는 이를 당해 절차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구제절차상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입장을 달리 한다. 통설은 유죄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고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재심사유를 고려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례는 통설보다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통설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판례는 소취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소송절차 내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1997.

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민사소송규칙 제67조가 준용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8조) 항소인 측에서 당해 항소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다투 수도 있다. 기존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원심판결과 같이, 배임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소취하가 외형상 존재하고 이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즉 상소취하의 의사에 의하여 상소취하가 이루어진 이상) 상소취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대리인의 행위가 상대방 등과의 담합에 의한 배임행위라고 하더라도 상소취하약정이라는 소송상 합의(사법행위)가 비진의표시를 유추적용하여 무효가 될지 언정 이와 별개의 상소취하행위(즉 상소취하서의 제출행위)는 상소취하의 의사가 존재하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러한 기존 판례의 입장과 달리, 상소취하행위 자체에 가벌적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물론 유죄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상소취하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된다고 보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가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와 관련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소취하행위 내지 상소취하행위는 별개의 것임을 전제로 소취하행위 내지 상소취하행위 자체가

매우 복잡한 방식에 의하여 적용되게 된다. 소취하행위 내지 상소취하행위가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① 소취하행위 내지 상소취하행위 자체가 강요나 폭행에 의한 경우에는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그 효력이 부정된다. ② 소취하행위 내지 상소취하행위가 사기·강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사기·강박 등 행위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외에 소취하행위 등이 외형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부정된다(사기의 경우에는 비록 소취하약정 등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취하행위 등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예상할 수 없게 된다). ③ 소취하행위 내지 상소취하행위가 대리인 내지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외에 소취하 등의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하여야만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판례와 대상판결의 공통된 문제점은 대법원이 소송행위의 흠과 그 효력의 문제에 있어서 소송행위가 사법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통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무효의 인정에 매우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닌, 소송절차를 종료케 하는 소취하 내지 상소취하의 흠에 있어서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너무나 형식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기존 판례는 유죄확정판결 외에 다른 요건을 추가하여 그 소송행위라는 외형에 부합하는 의사의 존재를 요구하고, 대상판결은 유죄확정판결 외에 상대방과의 담합 등 실질적인 흠의 존재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3) 결 어

기존 판례가 통설의 입장과 달리 소송행위의 흠에 관하여 매우 경직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이러한 경직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취하행위 내지 상소취하행위와 같은 소송종료행위가 다른 사람의 처벌받을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비록 이러한 행위가 소취하의사 내지 상소취하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마당이라면 그 효력의 부정을 그토록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국민을 위한 민사사법절차에서 구제방법을 경직되게 운용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소취하 등의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의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 내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kimhyup@skku.edu

소 취하 무효요건에 '담합 등 실질적 흠결' 요구

통설·기존 판례보다 좁게 해석 ... 경직성 문제

6. 27. 97다6124, 2004. 7. 9. 2003다46758 등). 다만 판례도 소취하에 관한 약정이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소취하서의 제출 역시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유죄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도 소취하의 약정뿐만 아니라 소취하서의 제출(소취하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85. 9. 24. 82다카312, 313, 314).

민사법원이 다른 사람의 사기·강박 등의 행위가 처벌을 받을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민사절차의 성질상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설의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따라서 소취하 등이 다른 사람의 사기·강박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유죄확정판결 등을 요구하는 판례의 입장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판례는 다른 사람의 행위가 처벌을 받을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 외에도 이에 추가하여,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한 소송행위가 외형상 존재할 뿐이고 이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소송절차 내에서 그 무효를 고려할 수 있다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84. 5. 29. 82다카963).

(2) 기존 판례 및 대상판결의 문제점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소취하

이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외형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는, 그 접근방식 내지 논리전개를 달리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를 의식하여, 대리인의 배임행위로 이루어진 상소취하가 재심사유가 되기 위하여 단순히 대리인이 문제된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소송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통모하여 가담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한 경우일 것을 요구한다. 대상판결이 기존 판례와 달리, 흠이 있는 소취하행위 내지 상소취하행위에 있어서 외형에 부합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실질적인 흠"이 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가져온 이유가 분명치 않다.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정도"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매우 애매하다.

이러한 대상판결대로라면 앞으로는 소취하 내지 상소취하의 흠과 관련하여, 판례는

주요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상고기각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였으나, 검사는 약 9개월 동안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 이 경우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는가?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제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검사에게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상금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판결 상고기각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익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

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와 같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이행으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상고기각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고신고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 B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A의 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A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다. B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 A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와 증거능력 (소극)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감정에 필요한 처분 및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

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강제채혈할 수 있는 방법 (사후 압수영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거가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 죄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이 사건 채혈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등의 증거는 위법 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자백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추심금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상고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및 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 그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 유효한

지 여부 (소극)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에 따른 추심명령의 효력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룰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룰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가압류 및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A 아파트단지 및 B 아파트단지 및 C 아파트단지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000,000,000원'으로 기재된 경우, 가압류 및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새 법률을 소개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제정 / 2012. 12. 1. 시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서명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 개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등으로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3자에게 제출한 경우 제3자가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증을 행정기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등은 발급시스템에서 민원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및 관

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의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는 그 발급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11. 12. 제정 / 2012. 12. 1. 시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성명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하도록 하였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 신분증으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捺印)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 위조·변조 및 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시 기재한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행정기관 등에 법률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수법인 및 학교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암호의 입력, 민원인이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 및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의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였다.

- 행정기관 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발급증에는 발급일시, 성명 및 용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발급기관에 대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주도록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 11. 12 일부개정 / 2012. 11. 18. 시행

- 평균수명의 연장, 의료수준의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의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장년 인력의 취업 수요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출연금의 용도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처리기준을 정비하여 모든 피출연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 예술인 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예술인들은 활동 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술인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였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확실히 산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물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판례 쟁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이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준비한 흉기는 살인예비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를 상해하기 위해 준비한 흉기는 상해예비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몰수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이 흉기로 상해를 하려고 흉기를 준비하였으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상해하거나 흉기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상해한 경우에만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자기앞수표는 기존의 범행에서 중국에 송금하려고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송금하려고 계획한 것인데 차후의 범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총평

몰수는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자주 보안처분이라고 하지? 입법자를 형벌과 보안처분도 구별 못하는 바보로 보는거야?

글 :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원장 / 그림 : 이영욱 변호사

출처 : 만화 형법 판례 "형법각론" 【법률저널】

로스쿨 포럼④



이정원 변호사

변협 수장에게 바라는 로스쿨 해법

해마다 전국의 교수들이 그 해의 상황을 빗대어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몇 년 전이었던가. 발표되었던 사자성어가 '당동별이(黨同伐異)'였다. 사전적 의미로는 '같은 무리와는 당을 만들고 다른 자를 공격한다'라는 뜻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이익만을 위해 서로 편을 갈라 물어뜯으며 싸우는 모습을 은근히 비꼬는 말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대권후보들 간의 이전투구는 점입가경이다. 이와 더불어 첫 직선제 협회장선거를 둘러싸고도 '당동별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협회장선거에서도 로스쿨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이다.

'로스쿨제도 전면 재검토'에서부터 '변호사시험 합격률상향' 주장에 이르기까지 로스쿨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이번 협회장 선거를 통해서 분출될 것이고, 회원들 간의 '상화하택(上火下澤, 서로 물과 불이 되어 갈등한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도입되어 1기 졸업생이 배출된 당대에 로스쿨제도의 폐지 주장은 일단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그렇다면 로스쿨 문제는 옷을 갈아입고 '사법시험 존치'라는 이슈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이 시점에 로스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변협의 임원으로서 한마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다. 로스쿨문제를 둘러싸고 이해를 달

리하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존재하며, 변협은 그 중 일방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법원과 검찰, 법무부와 교과부, 로스쿨협의회와 로스쿨학생협의회, 여기에 사법연수원생들까지... 모두의 입장은 각양각색이다. 하물며 로스쿨 내부에서 학교 측, 교수 측, 학생 측의 주장조차 모두 제각각이다.

변협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다양한 카운터파트너들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여기서 일방적인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목적달성은 고사하고, 협상력조차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변협 내부의 임원들 사이에서조차도 일치된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협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변협이 로스쿨대책과 관련하여 그간 한 일이라고는 신규변호사들의 취업을 제고를 위해 정부와 회사들을 설득하고 회원들에게 취업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 정도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나온 결과물이 지난 6월 오픈한 변호사취업정보센터(<http://career.koreanbar.or.kr>) 사이트이다.

올 한해에만 쏟아져 나온 신규 법조인의 수는 도합 2481명(사법연수생 1030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이고, 때문에 대량실업상태를 예견하면서 이들의 취업 문제를 한

목소리로 걱정하였다.

변호사취업정보센터에 대한 반응도 가히 폭발적이었다. 현재 일일방문자 수는 3500여명, 누적 방문자수는 51만여명에 달하니 말이다.

하지만 우려하였던 대량실업상태는 야기되지 않았다. '밀은불우(密雲不雨, 짙은 구름이 끼어 있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야 할까? 어찌하였든 현재 1기 로스쿨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대략 9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구직자들이 스스로 눈높이를 낮춘 탓도 있고, 이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 취업의 질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다음 변협의 수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지고 가야하는 무거운 자리이다. 모쪼록 이번 협회장 선거가 '당동별이'가 아닌 변호사들의 지혜를 한자리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변협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이야기들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들이 제안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지금 로아시아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에 있다. 어제는 각국의 청년 변호사들과 어울려 저마다의 고충을 토로하며 각국의 상황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들의 눈은 미래를 이야기하며 반짝였다.

누가 우리들의 눈을 반짝이게 해 줄 수 있을까?

pluslawyer@gmail.com

첫 직선제 협회장 선거에서도 '당동별이' 양상 벌어져 이번 선거에서도 로스쿨 문제는 뜨거운 감자...변협은 다양한 카운터파트너들과 마주 앉아 지혜 모아야

로스쿨통신

시험아 사랑해



이창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비법학사에게 3년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을 갖추기엔 너무 짧다 하지만 시험을 거듭 거치다보면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끔찍한 시험이 때로는 반갑기도 하다

비가 내리고 나니 이제 완전한 겨울이 다가온 것 같다. 패딩점퍼를 입고 옷깃을 여며도 품속으로 스며들어오는 찬바람을 다 막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걸 보면,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시험은 또 몇 번이나 밤을 새야 하나 좀처럼 가능할 수가 없다.

2학년 기말고사를 포함하여 총 여섯번의 시험이 남았다. '2학년이 되면 아무것도 몰라 힘들었던 1학년 시기보다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래도 그 여섯번의 시험이 끝나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 또한 막연한 희망으로 그칠 것 같다.

학부시절 전공이 응용화학이었던 탓에 법학을 공부해본 적이 없어, 1학년 1학기 때에는 기본법을 2학기 때에는 소송법 등 소위 말하는 후사법을 공부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법률용어가 익숙해지고 기초는 갖추어졌다고 생각했지만, 2학년이 되자 각종 실무과목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문서의 작성, 형사재판실

무, 민사변호실무 등등...

1학년 때에는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았는데, 2학년이 되니 실무과목의 과제가 많아지고 실무과목의 특성상 실제법의 배경지식이 요구되다보니 실무과목의 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다. 혼자 공부할 시간이 더욱 부족해지면서 공부해마다 어려워졌다. 3학년이 되면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할테니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보다 공부가 쉬워진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이런 실무과목은 무척이나 재미있다. 소송서류를 뒤적거리며 변호사가 된 듯한 달콤한 착각도 해보고, '세상엔 별일이 다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재미난 사건도 많다. 그리고 한참동안 서류를 넘겨보고 참고서를 찾아보면서 작성한 검토기록이 모범답안과 유사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해진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찾아나가는 재미조차 없었다면, 공부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로스쿨에서의 시험기간은 열기가 대단하다. 상대평가로 학점이 부여되므로 학우들과 서로 경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점이 실습과 취업, 장학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

기 때문이다. 언젠가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기숙사로 가는 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변호사 시켜줘도 되지 않나?'라는 건방진(?) 생각을 아주 잠깐 해본 적이 있었다.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물론 안 될 일이고, 그리고 사실 그건 바라는 바도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자격을 취득함이 마땅하고, 스스로에게도 떳떳한 일이다.

시험을 거듭 거치다보면,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시험기간동안 긴장감을 갖고 공부한 내용이 결국은 내재화되어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을 거칠 때마다 사례들을 풀어나가는 스스로가 굉장히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시험기간이 아닐 때 시험기간과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끔찍한(?) 시험기간이 또다시 돌아오고 있다. 몇 번씩 밤을 지새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겠지만, 이 시험이 끝나면 예전에는 풀어나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게 되리라.

비법학사에게 3년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을 갖추기엔 너무 짧다. 하지만 남은 여섯번 열심히 허물을 벗어낸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끔찍한 시험은 때로는 반갑기도 하다. 마치 욕을 하면서도 보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막장드라마처럼 말이다.

cptleecm@gmail.com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문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8조 및 동 시행규정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후보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후보자 등록자격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2. 후보자 등록기간 : 2012. 11. 26.(월) ~ 11. 30.(금) (매일 09:00~18:00)

3. 후보자 등록신청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 신청(방문 접수만 가능)

4.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1부
- 최종학력 및 최고 학위 증명서 각 1부
-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1부
- 징계전력에 관한 증명서 1부
- 명함판 사진 5장 및 사진 파일(JPG 형식)
- 선거비용(기탁금) 납부증명서 1부
- 후보자의 의견 및 공약 등을 기술한 소개서 원고(200자 원고지 40장 이내) 1부 및 그 파일

5. 선거비용 납부

- 납부시기 : 후보자 등록신청 전
- 납부금액 : 50,000,000원(직접 납부 및 계좌 입금)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8-608426,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

6. 제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7. 등록 문의 및 신청서 배부처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전화 : 02-2087-7881~3, 팩스 : 02-2087-7889)

2012. 11. 25.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 안내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 사무소 위치 등의 내용을 미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거규칙 제11조 제4항)

▶ 협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회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연락처: 02-2087-7881~3, 팩스: 02-2087-7889)으로 선거사무국 설치 신고서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election.koreanbar.or.kr>) '알림마당'의 '서식 안내' 참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